

수 신 : 회원제위

참 조 :

제 목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희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, 비례대표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10903, '26. 8.28)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'26. 9. 10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F.033-257-43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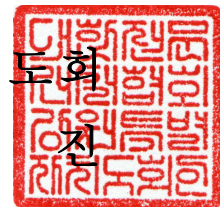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- 임금·자재대금 체불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 지급 제한 의무화
(안 35조제5항 개정)
- 직접 지급 제한 위반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(500만원 이하)부과
(안 제99조제8호의2 신설)

붙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2. 의견 제출 양식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
회 장 오 성 진



담당 주임 한진섭 경영지원부장 유제연 기획관리실장 이을예

시행 전건협 강원 제 633호 (2026. 9. 3)

우 243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/ gangwon.kosca.or.kr

전화 033-254-4324 전송 033-257-4324 / 전자우편 kosca32@kosca.or.kr